

비R&D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 성장과 도약 발판을 지원하는 『비R&D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10일
국립군산대학교 앵커사업단장

1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성장과 도약 발판을 지원
-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를 보유(예정)한 (예비)창업자
- ☐ **지원규모** : 총 5개사 내외 (최대 12백만원)
-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지원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치한 (예비)창업자
 - ① 본교 소속 교원 (예비)창업자
 - ②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를 둔 창업기업
- 교원의 경우, 본교 전임교원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에 해당
 - ※ *기창업자의 경우 하기 내용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 기업(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 위치한 기창업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어야 함
 -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2019년 8월 10일 이후 창업한 기업
 -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기업에 한함**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여야 함

○ 본교 전임교원을 제외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 불가

□ 창업인정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1]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참조)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 신청(지원) 제외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단, 신청 접수 마감일('25.09.24.) 혹은 주관기관이 제시한 기한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징수유예 포함) 중인 자(기업)
 -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 기타 전담·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 기간** : 5개월 ('26.9월 ~ '27.1월)

□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예비)창업자별 최대 12백만원 사업화지원비 집행
- (희망 시) 전문가 멘토링, 우수기업 대상 IR 기회 및 후속연계 지원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지원금 (최대 12백만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12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보조금 100% * (예비)창업자 대응자금 없음 • 사업화 지원금 사용 시, 부가세 포함액 사용 가능		
	< 사업비 비목 >		
	보조세목	세세목	비목 정의
	재료비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부자재,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일반용역비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인쇄물 제작, CI/BI 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수용비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제품 홍보 또는 시장진출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록비(여비 집행 불가) - 시험인증비: 제품 성능, 안전, 환경 등 관련 시험인증기관에 지급하는 인증비용 - 보관료: 시제품, 재료, 장비 등 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세무회계비: 세무 기장 대리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 위탁비(협약기간 내에 한함) - 멘토링비: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비

□ 신청 · 접수기간

- 공고일 ~ 8. 25.(화) 18시까지

※ 유의사항

- 1) 증빙서류 누락, 내용 오기입 등으로 수정·보완은 **신청·접수기간 내 1회** 가능하며,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외한 서류의 경우 **기간 외 제출, 수정 절대 불가**
- 2) 제출 파일명 및 메일 제목을 정확히 명시하여 **E-Mail 발송**
 - 비R&D 기술사업화 프로젝트_기업/교원(택 1 기재)_대표자명
 - (수정 시) 수정본(날짜)_비R&D 기술사업화 프로젝트_기업/교원(택 1 기재)_대표자명
- 3) **접수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대표자는 발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전까지 제출 필요(참고사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붙임 1])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매출액·고용·투자유치 자료,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sdm91@kunsan.ac.kr
 - 파일명: 비R&D 기술사업화 프로젝트_기업/교원(택 1 기재)_대표자명
 - 메일 제목명: 비R&D 기술사업화 프로젝트_기업/교원(택 1 기재)_대표자명
- 접수 관련 문의처
 - 국립군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창업지원팀 063-469-4333

□ 선정평가

< 운영 절차(안) >

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③최종선정	④과제수행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서류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선정 / 협약 체결	(예비)창업자별 비R&D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수행
주관기관 실시	주관기관 실시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대상)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실시	(예비)창업자 실시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도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선정대상자
(최종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확정

< 서류평가 항목(안) >

세부평가	배점	평가내용
1. 문제인식 (Problem)	20점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배경
		1-2. 시장에서의 필요성 등
2. 실현가능성 (Solution)	30점	2-1. 창업아이템의 사업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
		2-2. 지역사회 내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 가능성 등
3. 성장전략 (Scale-up)	20점	3-1.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3-2. 사업화를 위한 목표달성 방안(전체 로드맵, 자금 소요계획 등)
4. 기업 구성 (Team)	30점	4-1. (예비)대표 및 고용 (예정)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4-2. (예비)창업자의 아이템과 국립군산대학교 주력 산업분야의 부합 정도 등

□ 최종선정

- 주관기관의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예비)창업자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최종선정은 서류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신청 당시 제출한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에 의거), 이의제기 절차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음

6

선정자의 의무

- (예비)창업자(이하 '대표자')는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대표자가 가진 사업비의 권리·의무가 법인에게 귀속되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대표자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전담/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할 수 있음

◆ 국립군산대학교 앵커 비R&D기술사업화 프로젝트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자체)지원금(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동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권고](#)) 및 PDF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사업(RISE) 세부관리 기준 및 지침,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과정에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응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에 의거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과제수행 기간(협약기간)도 조정될 수 있음

참고 1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 / 증여	개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법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동종의 신규법인 설립			창 업		
			이종변경			창 업		
창업이력 없음	개인 / 법인	사업자 신설					창 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불인정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창 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 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불인정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기존법인의 형태변경 (조직변경 등)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참고] 본 기준표는 참고용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여부로 창업 인정 여부 최종 확인 예정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4.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5. [경과조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2020.10.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6. 이종업종 및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 판단, 세세분류 불일치 시 이종업종 판단)
7.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단,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만 본 사업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